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관련 법령

편집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가지 법령이 연관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방법이 달라 관련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주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하고 조항과 연관되는 연관되는 타법의 조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목 차 ----------

▫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	-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장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 문화 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 정비법 제5장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 농촌 휴양자원 개발 사업	- 농어촌 정비법 제7장 제1절 농어촌 휴양 자원 개발
▫ 한계 농지 사업	-농어촌 정비법 제7장 제2절 한계 농지 등의 정비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관련법령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90. 8. 8 대통령령제13063호	●동법 및 타법 관련조항
제정90. 4.7법률제4228호 **제5장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제32조**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이하 "정주생활권"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제33조**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4조**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정주생활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35조** (정주생활권의 개발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이하 "정주생활권"이라 한다)의 개발은 면사무소 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36조**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94·12·31〉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계획안의 개요 ②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조사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94·12·31〉 **제37조** (개발계획의 고시)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31〉 1. 개발계획의 목적 2.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3. 개발의 효과 4. 기타 정주생활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법]** ○ **제52조 (농어촌발전심의회)** ① 기본방침, 도계획 및 시·군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시·군에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과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사업별로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심의회, 도심의회및 시·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개발지구의 지정) ① 내무부장관은 오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이하 "관계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수립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에 따라 정주생활권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796〉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의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94·12·22 법4796〉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법4552〉

제35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주생활권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취락의 정비·개발
3. 농어촌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5. 농공단지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제38조 (개발계획의 변경)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한다. 〈개정 94·12·31〉
1.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3. 물가상승동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제39조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연차별 투자계획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효과
6. 세부설계도서
7.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제40조 (사업의 위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조의 2제1호2·12·24, 93·12·14〉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
3.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4.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업을 위탁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91. 사업수행 능력
2.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자의 업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련여부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위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의 지정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개발지구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명칭)
① 이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전문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67·3·30, 73·3·5, 76·12·31, 80·12·31, 94·12·22〉

② 이 법에서 "지역조합"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전문조합"이라 함은 전문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94·12·22〉

③ 지역조합은 그 명칭중에 각 지방명을 붙인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전문조합은 그 지방명과 품목

6. 농어촌용수와 배수의 개발과 그 시설의 정비·확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6조 (사업의 시행)
①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에 따라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12·22 법4796〉
②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796〉

제37조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의 지원등)
① 정부는 정주생활권개발을 위한 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91·5·3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2.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3. 사업비의 부담방법
4.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소유 및 시설관리방법
④ 수탁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⑤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개발계획서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41조 (사업비의 신청)
① 도지사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업비를 농림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야 한다. 〈개정 96·8·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비내역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의 효과

제42조 (자금의 지원)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5·6·23〉
1. 수탁사업자
2.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편익·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4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4.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지원사업

제44조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1·2·1,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대령

또는 업종명을 붙인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④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문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67·3·30, 73·3·5, 76·12·31, 80·12·31, 94·12·22〉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등)
①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③ 지역조합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을, 업종조합은 업종별축산업협동

는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제38조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주생활권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차별 추진계획
3. 개발대상지역의 선정
4. 예산의 지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과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
① 정부는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획기술지원단을 설

14447 · 대령14450, 95·6·23, 96·8·8〉
1. 재정경제원차관·내무부차관·교육부차관·농림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8·8〉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45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부에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을 한다. 〈개정 96·8·8〉
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
2. 정주생활권의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3.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4.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8·8〉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6·8·8〉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소속 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조합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말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농림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종류)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76·12·31]

제16조의2 (어촌계)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계(새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법인격을 가진 어촌계의 분할·합병·해산·동기·청산에 관하여는 제5절·제6절및 제7절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6·12·31]

○임업협동조합법

제3조 (법인격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임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② 조합은 지역임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과 전문임업협동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94·12·22〉 ③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방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94·12·22〉 ④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가 아닌 자는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3·6·11]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정 94.12.22 법률제4823호

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및 정책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정주생활권개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집단화된 마을조성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이하 "생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이하 "생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라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정95.6.23대통령령제14679호

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개요
2.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3. 주요시설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5. 사업의 시행기간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96·8·8〉
1. 농어촌진흥공사
2.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 관련연구기관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제32조 (생활환경정비구역의 고시)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동법 및 타법관련조항

[동법]제2조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개정95·12·29 법5111〉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 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촉진법 및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장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②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생활환경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을얻은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로 하여금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구역이 2개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말한다)·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연월일
4. 사업개요
5. 사업의 시행기간

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의 변경
2.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증감
3.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의하여 해당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3·8·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농어촌발전심의회)

① 기본방침, 도계획 및 시·군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과 다)를, 시·군에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둘 수 있으며, 중앙심의회, 도심의회및 시·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사업별로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심의회, 도심의회및 시·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제12조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제22조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제3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1조제2항의 사업은 시장(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제34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2. 농어촌의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35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2.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백분의 1의 지적도
제36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전비 또는 철거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농어촌주택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농어촌주택·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서의 원칙등)
①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지선어장에서의 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황여건, 저질, 해양환경전망, 경제성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산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지구별 ·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수산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제25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자
2.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자
4.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동법]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림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하 여 기본조사를 실시

3.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4.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5. 편익·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르고, 제1항제3호의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은 제2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른다.

제3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부장관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처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공고전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물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가격
5.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에 한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과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인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 및 임대료·임대주택의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38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하고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동법]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ㅇ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ㅇ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 건설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0·1·4, 87·12·4, 95·12·29 법5109〉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

제39조 (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어촌진흥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지역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

제40조 (기존건축물의 철거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지로의 전환,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중 철거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41조 (농어촌주택등의 분양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기타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의 공급방법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조 (기술지원등)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비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수립된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하여야 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시한다. 〈신설 80·1·4, 82·12·31, 93·8·5〉

○국토이용관리법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3·8·5〉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1의2.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자
3.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89·4·1〉 [전문개정 78·12·5]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정 94.12.22 법률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동법 및 타법 관련조항
7장 제1절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제66조** (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육성할 수 있다. ② 농어촌휴양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농원사업: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수산물 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업을 포함한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휴양단지사업: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체육·휴양시설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업을 포함한다)·음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말농원사업: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농어촌휴양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③ 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어업인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	제정 95. 6.23 대통령령 제14679호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①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어촌휴양지 지정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사유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을 직접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 (농어촌휴양지의 지정등 고시)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휴양사업의 종	[동법]**제94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제98조** (허가취소등) ③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 · 군수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 또는 승인을 한 때또는 농어촌휴양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어촌휴양지중 주말농원을 도시지역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68조,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①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 임대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선수금)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중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0조**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휴양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 시설을 분양 · 임대받은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이 공동시설등을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주말농원의 농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민박농어가의 지정) 시장 · 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제72조**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류 2. 명칭 · 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 4. 사업기간 5. 지정 · 승인 및 해제 연월일 6. 사업개요 및 승인사항 7. 사업비 **제65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등)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임대대상자는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인의 단체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법 제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의 농지임대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이용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 · 임대의 방법 · 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선수금)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양도 · 양수등) 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① 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농어촌휴양지 시설을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 2. 농어촌휴양지 이용객에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받는 행위 ② 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장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 (지정취소등)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촌휴양지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67조** (조합의 설치) ① 농어촌휴양지의 공동시설등을 운영·관리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시설을 분양·임대받은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소재지 3. 조합원의 동의조서 4. 공동시설등의 운영관리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한계농지사업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정 94.12.22 법률제4823호

7장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이하 "한계농지등 정비"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77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2. 관광농원, 주말농원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3.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공업 ·문화 및 체육시설등 다목적 이용

제78조 (예정지조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정 95. 6.23 대통령령제14679호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68조 (예산의 지원)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변경
2.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3. 한계농지정비지구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제7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등의 고시)
법 제79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동법 및 타법관련조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농지의 재개발등)
②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외의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불량농지, 간척지 또는 임야등을 매입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어촌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94·11·11〉
1. 농지 · 초지 및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의 증대를 위한 공업용지
3. 도·농간의 교통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등

[동법]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법]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제79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 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3.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지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지역(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으로서 지리적 · 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등 농어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등)
시장·군수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의 정비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제13조(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세분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용도용지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설환지를 정할 수 있다.
[동법]제16조 (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 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2.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농지개량조합이 없고, 그 인접 지역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인접 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농지개량조
인수·관리하게 한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

제8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관련규정의 준용)
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한다.
1. 제77조제1호의 한계농지등의 농림수산업적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77조제2호의 한계농지등의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2. 대상정비지구의 범위
3.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사업비부담방법
5.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방법
6.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의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96·8·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와 동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정한다.
⑤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용지는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의 소유로 동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의 인수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동법]제22조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등)
①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지선어장에서의 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황여건, 저질, 해양환경전망, 경제성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 구중 농어촌휴양지개발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 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77조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다목적 이용 정비사업중 농어촌주택 · 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교환 · 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제83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정비농지등 토지 및 시설은 농림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및 농림수산업관련 기업

2.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은 농림어업인,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거주희망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 임대에 관한 방법 · 절차 및 가

9. 기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및 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수산 관련기업은 종묘와 농약·비료등농업기자재를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유통·저장·제조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 · 임대의 방법 · 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산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지구별·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수산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제24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제26조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이관)

① 수산청장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수산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비농업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제84조** (투자 및 선수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 · 이용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 및		취한다. ② 수산청장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인수 ·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인수 · 관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동법]제94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법** **제111조** (임야의 매매) ①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이하 "매매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증명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조림·육림·종묘·임산물생산·관상수재배 기타 산림경영사업을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임야에 대한 5년이상의 산림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산림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2. 제1호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임야에 관한 이용계획서(이하 "임야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증명의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1·13 법420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 **제5조의2**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5·6·23, 96·8·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

임야를 매입할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산림법 제1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촌진흥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 · 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 · 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와 동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임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7.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 8.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9. 기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본조신설 93 · 12 · 14]